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0. 14.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규식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재정지원(안 제3조)

- 1)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함
- 2) 지원대상은 성동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적자업체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소지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임

다. 지원신청 및 정산 의무(안 제4조 ~ 제5조)

- 1)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8. 2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지방보조금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8조 시행규칙까지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정산 의무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지만, 2004년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마을버스 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 업체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시민 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해 201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¹⁾를 근거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침”²⁾을 수립하고 적자업체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장비 확충 등의 항목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62호, 2011. 2.

○ 우리 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7개 업체의 차량 60대 중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는 차량 대수는 46대(3대 예비차)로 11대(2대 흑자, 9대 적자)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년 평균 적자 금액은 2억 2천여 만 원입니다.

○ 이에, 구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조 2항에 따르면 성동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이중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시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우선순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미지원 업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향후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차고지 등 업체 간 자원 공유, 운행비용 절감 노력 등 마을버스 업체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관리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참고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개요

지원대상	적자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선정하며, 2011.1. 이후 신설 및 등록된 차량은 제외하고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기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운송원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2019년 市 기준운송원가: 457,070원, 한도액: 19만원

※ 참고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11,000	12,300	17,146	19,900	26,150
적자업체지원	7,516 (34개사)	9,645 (40개사)	13,596 (50개사)	19,213 (56개사)	23,150
인센티브지원	2,934	2,105	3,000	-	1,500
시설·장비지원	550	550	550	587	1,500